#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1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이 용・金炳旭・김태호

이주환 · 최승재 · 조경태

김예지 • 신원식 • 지성호

배준영 · 정희용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긴급한 국외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기부금 접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 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기부금 접수 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제69조의3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 ⑨ 국외문화재재단은 제8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① 제8항에 따른 기부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생 략)	환수 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
	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활동
	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u>수 있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 ⑦ (생 략)	설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u>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u>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
	단에 기부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⑨ 국외문화재재단은 제8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
	<u>수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⑩ 제8항에 따른 기부의 절차,
	<u>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